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7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허종식 · 허성무 · 박선원
박찬대 · 박 정 · 이용우
복기왕 · 김태선 · 김교홍
이훈기(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역학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독성연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반 또는 독성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56조제3항의 죄 또는 제57조제3항의 죄는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원인이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것임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에 의해 증명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6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56조제3항의 죄 또는 제57조제3항의 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역학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독성연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반 또는 독성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③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u>

<u><신 설></u>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u>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u> <u>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u> <u>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u> <u>제5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u> <u>제56조제3항의 죄 또는 제57조제3항의 죄는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원인이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것임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에 의해 증명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u> 제60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u>
---	---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